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21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법 위반상태를 해소한 경우
-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법 제9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 1)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이해관계인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건설기술인이 법 제20조제2항 전단에 따른 교육·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은 경우	법 제91조제3항 제1호	50만원	50만원	50만원

나. 사용자가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경비를 부담하지 않거나 경비 부담을 이유로 건설기술인에게 불이익을 준 경우	법 제91조제3항 제2호	50만원	50만원	50만원
다.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경우	법 제91조제3항 제3호	150만원	225만원	300만원
라. 법 제22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부당한 요구에 불응한다는 이유로 건설기술인에게 불이익을 준 경우	법 제91조제2항 제1호	300만원	500만원	1,000만원
마. 건설기술인이 법 제24조제4항을 위반하여 건설기술경력증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	법 제91조제3항 제4호	50만원	50만원	50만원
바. 법 제26조제3항 본문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변경등록을 한 경우 1) 변경등록 지연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2) 변경등록 지연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3) 변경등록 지연기간이 3개월 이상이거나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4) 변경등록을 거짓으로 한 경우	법 제91조제3항 제5호	10만원 30만원 50만원 200만원	10만원 30만원 50만원 200만원	10만원 30만원 50만원 200만원
사. 법 제26조제4항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 신고 지연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2) 신고 지연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3) 신고 지연기간이 3개월 이상이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91조제3항 제6호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아.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영업 양도 또는 합병 신고를 하지 않 은 경우 1) 신고 지연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2) 신고 지연기간이 1개월 이상 3 개월 미만인 경우 3) 신고 지연기간이 3개월 이상이 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91조제3항 제7호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자. 법 제31조제1항·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명령을 받고 영업정지기 간에 건설엔지니어링 업무를 수 행한 경우(법 제33조에 따라 건설 엔지니어링 업무를 수행한 경우 는 제외한다)	법 제91조제3항 제8호	300만원	300만원	300만원
차. 법 제31조제3항을 위반하여 영 업정지기간에 상호를 바꾸어 건 설엔지니어링을 수주한 경우 1) 수주 건수가 1건인 경우 2) 수주 건수가 2건 이상인 경우	법 제91조제3항 제9호	50만원 100만원	50만원 100만원	50만원 100만원
카. 법 제33조제1항 후단에 따라 등 록취소처분 등을 받은 사실과 그 내용을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의 발주자에게 통지하지 않은 경우	법 제91조제3항 제10호	300만원	300만원	300만원
타.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않거나 관계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91조제3항 제11호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
파. 법 제3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 은 경우	법 제91조제1항 제1호	1,000만원	1,500만원	2,000만원
하. 법 제39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건설공사를 착공하게 하거나 건설 공사를 진행하게 한 경우	법 제91조제1항 제2호	1,000만원	1,500만원	2,000만원
거. 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 른 평가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91조제2항 제1호의2	500만원	750만원	1,000만원

너. 법 제54조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 및 조치결과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법 제91조제3항 제12호	150만원	225만원	300만원
더.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지 않은 경우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품질관리비를 사용한 경우	법 제91조제2항 제2호	250만원	375만원	500만원
러.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승인 없이 건설사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착공했음을 알고도 발주자가 묵인한 경우	법 제91조제3항 제13호	150만원	225만원	300만원
머. 법 제62조제3항·제5항 및 제8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법 제91조제3항 제14호	150만원	225만원	300만원
버. 법 제62조제7항에 따른 종합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1) 제출 지연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2) 제출 지연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3) 제출 지연기간이 3개월 이상이거나 제출하지 않은 경우 4)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법 제91조제2항 제3호	500만원 750만원 1,0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750만원 1,0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750만원 1,000만원 1,000만원
서. 법 제62조제14항에 따른 건설공사 참여자 안전관리 수준 평가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91조제2항 제3호의2	500만원	750만원	1,000만원
어. 법 제62조제18항에 따른 설계의 안전성을 검토하지 않은 경우	법 제91조제2항 제3호의3	500만원	750만원	1,000만원
저. 법 제62조제18항에 따른 설계의 안전성 검토결과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법 제91조제3항 제15호	150만원	250만원	300만원

처.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지 않은 경우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비를 사용한 경우	법 제91조제2항 제4호	250만원	375만원	500만원
커. 법 제66조제3항에 따른 환경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지 않은 경우 또는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환경관리비를 사용한 경우	법 제91조제2항 제5호	250만원	375만원	500만원
터. 건설공사 참여자(발주자는 제외한다)가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건설사고 발생사실을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	법 제91조제3항 제16호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
퍼. 법 제77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91조제1항 제3호	1,000만원	1,500만원	2,000만원